

특약 변경 대비표

- 약관명 : 『 행복Together 적금 』 특약
- 변경 시행일 : 2017년 2월 15일
-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: 적용
- 개정 내용 : 적금 1년제인 경우, 급여(연금)이체 실적 인정대상 입출금통장 종류에
“하나멤버스 주거래통장” 추가

개정 전	개정 후	비 고
<p>제1조 ~ 제6조 (생략)</p> <p>제7조 이자 ① ~ ④ (생략) ⑤ 은행은 이 예금 1년제 가입고객이 가입월을 포함하여 4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까지 본인 명의 <u>행복knowhow 주거래 우대통장을 통한</u> 급여 또는 연금 이체실적 1회 이상 보유 시 연 (0.1%)의 우대금리를 만기 해지 시 제공합니다.</p>	<p>제1조 ~ 제6조 (좌동)</p> <p>제7조 이자 ① ~ ④ (좌동) ⑤ 은행은 이 예금 1년제 가입고객이 가입월을 포함하여 4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까지 본인 명의 <u>행복knowhow 주거래 우대통장 또는 하나멤버스 주거래통장을 통한</u> 급여나 연금 이체실적 1회 이상 보유 시 연 (0.1%)의 우대금리를 만기 해지 시 제공합니다.</p>	<p>급여(연금) 입금 통장 종류 추가</p>